

3.1.4 교육행정개선위원회규정

제정 1999. 08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교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본 대학교 교육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행정 개선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,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심의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행정 업무개선 및 제안에 관한 사항
2.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4. 기타 교육행정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개선 및 제안 신청) 교육행정 업무개선 및 제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<별지 제1호> 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